

대 법 원

제 2 부

판 결

사 건 2017도404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(절도), 주거침입
피 고 인 피고인
상 고 인 피고인
변 호 인 변호사 강창원(국선)
원 심 판 결 광주고등법원 2017. 2. 16. 선고 2016노375 판결
판 결 선 고 2017. 7. 11.

주 문

원심판결을 파기하고, 사건을 광주고등법원에 환송한다.

이 유

상고이유를 판단한다.

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(이하 '특정범죄가중법'이라 한다) 제5조의4 제6항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인이 그 범행의 수단으로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 등 죄에 흡수되어 위 조문에 규정된 상습절도 등 죄의 1죄만이 성립하고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하지 않으며, 또 위 상습절도 등 죄를 범한 범

